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수신 관내 의료기관 개설자 귀하
(경유)

제목 2024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의무교육 이수 안내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4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2. 자율점검은 의료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법을 숙지하여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율점검표는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3.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지원요청 및 신고)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4.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점검표와 의무 교육 자료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 및 제출방법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 |
|--|
| <p>① 2024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
- 제출기한 : 2024. 10. 31. [붙임1]</p> <p>② 의무 교육 실시(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이수기간 : 2024. 1. 1~ 2024. 12. 31.
- 제출기한 : 2024. 12. 31. [붙임2]</p> <p>③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minheewon@korea.kr), 직접 제출 가능</p> <p>④ 제출서식 : 인천서구보건소 홈페이지-참여소식-공지사항-보건소식
'자율점검' 또는 '의무교육' 검색</p> |
|--|

끝.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주무관

민희원

의약관리담당

배은정

보건행정과장

전결 2024. 9. 23.

박은정

협조자

시행 보건행정과-26669

(2024. 9. 23.)

접수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3층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심곡동) / <http://www.seo.incheon.kr>

전화번호 032-718-0424

팩스번호 032-718-0790

/ minheewon@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삶이 풍요로운 도시